

서울지방병무청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상병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임상병리사)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 월 7 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임용 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의료기술직 (임상병리사)	한시임기제 8호	1명	채용일 ~ 2027. 7. 11.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2 임용 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임상병리사	한시임기제 8호	○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병역판정검사직원), 병역판정검사규정 제22조(임상병리검사)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시 임상병리검사에 대한 임무 ○ 잠복결핵 검진 ○ 검체 수집 후 간염·간기증·소변·혈당·마약·에이즈 검사 등 실시 ○ 병역판정검사 장비 사용 보관 등 관리, 기타 병역판정검사 관련 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보수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 연령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직위별 요건
임상병리사	한시임기제 8호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임용예정직위 관련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내용	
우대요건	경력	1.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 최대 4년) * ‘관련분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 ** ‘근무경력’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름), 공공기관(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중 병원급* 이상 채용실, 진단검사의학실 근무경력자 추가 점수 부여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기간별 차등 배점 / 최대 4년)
	학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임상병리학 (학위별 차등 배점) * 전문학사 이상/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 청각사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등급별 차등 배점)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2급 이상)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2012. 1. 1. 이후 워드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정규직/비정규직, 상근/비상근, 계약직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상근 :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일마다 출근, 일정시간(주40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 **근무형태가 정규직, 상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상근 근무 주당 40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 접수 시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소극적 전형)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 ① 소통 · 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 · 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 · 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 · 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9.7.(월) ~ 9.21.(월)	'26.9.17.(목) ~ 9.21.(월)	'26.10.7.(수)	'26.10.12.(월)	'26.10.28.(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해당 시험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10분전까지 도착해야하며, 면접 개시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서울지방병무청 누리집,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연락두절,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1.(월)(3일간) *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접수)
 - ① 나라일터 로그인 - 우측상단 개인서비스(**개인 서비스**) 클릭
 - ②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대체인력뱅크-이력서 등록」 이력서 작성, 저장
- 제출서류 스캔 PDF파일 첨부(정부수입인지 및 모든 제출서류 스캔 첨부)
※ 서명이 필요한 모든 제출서류 본인서명 기재 요망
 - ③ 대체인력 선발공고 '서울지방병무청 한시임기제공무원(임상병리사) 채용공고' 클릭
 - ④ '지원하기'클릭, 이력서 확인 후 지원 완료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뱅크 이력서 지원현황' 에서 지원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 ⑤ 온라인 제출자는 면접 시 원본 제출
-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중 선택)
 - 마감일 : 2026. 9. 21.(월) 18:00까지(마감일 소인분 기준)

○ 제출방법 : 온라인 첨부(원칙)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처 : (우)07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한시임기제 채용 관련 서류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내 가능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나. 제출서류 * 공고문 붙임 응시원서 서식 사용

구 분	내 용
1. (필수)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의 총괄 목록
2. (필수)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5,000원(8~9호)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3. (필수)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응시요건 및 자격, 경력 등 우대사항 기재
4. (필수)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3매 이내로 작성
5. (필수)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A4 4매 이내로 작성
6. (필수)자격(면허)증 1부	○ 임상병리사 면허증
7. (필수)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이 기재되도록 발급 · 발급시 정보 최소화하여 발급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 미선택)
8. (필수)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9. (필수)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10. (해당자)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구 분	내 용
11. (해당자)경력 증명서 1부 - 근무처의 증명서 서식으로 발급하되, 증명서 서식에는 없지만 기재가 필요한 내용은 발급 담당자에게 기재 요청해서 발급 받아야 함 - 근무처의 증명서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서식(별지서식 제9호)의 경력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음 *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기간표시는 20○○.○.○. ~ 현재 라고 명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 부서, 근무형태(정규직/비정규직, 상근/비상근, 계약직 등)가 정확히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상근 :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일마다 출근, 일정시간(주 40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 근무형태가 정규직, 상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위 내용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12. (해당자)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임상병리학	* 전문학사 이상/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 전형위원 제척·기피 및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는 학교명은 제공되지 않음
13. (해당자)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청각사	
14. (해당자)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복수 소지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단,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0. 28.(수) ~ 11. 11.(수)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 채용기간 : 1년6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2026년 한시임기제 8호 : 2,378,30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예: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 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관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원증명 1. **국세증명신청** 2.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처리결과와 조회

민원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02 민원증명신청**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03 나의 민원증명 처리결과**
민원증명 신청 후 [민원증명 처리결과와 조회]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 증명
- 폐업사실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환납증명)
- 납부내역 증명(납세사실 증명)
- **소득금액 증명** 2.
-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채무제표 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증명(사업장 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
- 국세납세 증명 조회(경부관리기관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월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바로가기

- 자주 찾는 메뉴
- 세금증명 서비스
- My 홈택스
- 홈택스안내
- 접기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2-820-4313)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신고와 자격정지)】

제47조(치료감호의 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의료기술(임상병리사)	한시임기제 8호	1명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주요 업무	○ 임상병리사 - 채혈 등 검체 수집 후 생화학, 면역학, 혈액학, 뇨화학검사 등 실시 - 정도관리 실시 - 잠복결핵 검진 - 병역판정검사장비 점검 및 관리 - 병역판정검사시약 및 소모품 관리 - 병리검사 현황 유지 관리 및 보고 - 의료폐기물 관리 및 위탁처리 - 기타 병리검사 관련업무 및 병무행정 업무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기획 능력, 전략적 사고, 창의력, 전문성, 정보화능력 등
-------	--

필요 지식	○ 임상병리검사 / 정도관리 업무 전반지식 ○ 잠복결핵검사 관련 전문지식 ○ 채혈관련 전문지식
-------	--

응시자격요건	○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 최대 4년) * ‘관련분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 ** ‘근무경력’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중 병원급* 이상 채혈실, 진단검사의학실 근무경력자 추가 점수 부여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기간별 차등 배점 / 최대 4년)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임상병리학 (학위별 차등 배점) * 전문학사 이상/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 직무관련 자격증 : 청각사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 배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프로그래밍 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복수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적용 * 2012.1.1. 이후 워드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으로 인정 ※ 우대요건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26.10.12.)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별지서식 제1호>

제출서류 총괄표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성명	채용분야	직급	응시자격요건
	임상병리사	한시임기제8호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제출서류

○ 제출유무란 해당란에 “√” 표시, 번호순으로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 제출

목 록	제출여부	
1. (필수)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첨부)	☐ 제출	☐ 미제출
2. (필수)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자필서명	☐ 제출	☐ 미제출
3. (필수)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자필서명	☐ 제출	☐ 미제출
4. (필수)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자필서명	☐ 제출	☐ 미제출
5. (필수)자격(면허)증 1부	☐ 제출	☐ 미제출
6. (필수)주민등록 초본 1부	☐ 제출	☐ 미제출
7. (필수)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자필서명	☐ 제출	☐ 미제출
8. (필수)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필서명	☐ 제출	☐ 미제출
9. (해당자)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자필서명	☐ 제출	☐ 미제출
10. (해당자)경력증명서 1부(별지서식 제9호)	☐ 제출	☐ 미제출
11. (해당자)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임상병리학) 증명서 *전공표시	☐ 제출	☐ 미제출
12. (해당자)직무관련 자격증(청각사)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13. (해당자)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2026. . .

성명 : (서명)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응시원서 (원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본인은 서울지방병무청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 의료기술직(임상병리사)	
응시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 의료기술직(임상병리사)	
응시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임상병리사)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⑤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전자 정부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 가능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한시임기제 8호 (임상병리사)	응시 자격 요건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자격 증	면허(자격)명칭	면허(등록)번호	합격년월일	자격 검정기관
	임상병리사			

3. 우대요건

①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병원급 이상 체혈실, 진단검사의학실 근무경력 포함하여 모두 기재

관련 분야 근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근무일수	직위 (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00년00월00일			상근 /비상근 (주 00시간 근무)

② 병원급 이상 채혈실, 진단검사의학실 근무경력

* 부서가 채혈실, 진단검사의학실만 인정, 없을 시에는 예시를 지우고 '무'라고 적어주세요

채혈실 · 진단검사의학실 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근무일수	직위 (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채혈실)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00년00월00일			상근 /비상근 (주 00시간 근무)
	○○○○ (진단검사 의학실)					

③ 직무관련분야 학위(임상병리학)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00.00	

④ 직무관련자격증(청각사), 정보화 자격증

* 자격증이 없을 경우 예시를 지우고 '무'라고 적어주세요

자 격 증	자격증명(등급)	자격증번호	자격증 취득(예정)일	검정(교부)기관
	워드프로세서			
	청각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한시임기제 8호(임상병리사)
- ③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임상병리사 자격증 필수 기재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은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한 사본

- ④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우대요건 경력①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이후) 전체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 병원급이상 채혈실, 진단검사의학실 근무경력과 그 외 경력을 구분하여 모두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행,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상근'(통상근무자) 또는 '비상근'(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상근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우대요건 경력② 병원급 이상 채혈실, 진단검사의학실 근무경력에는 해당부서 근무 경력만 기재

※ 채혈실, 진단검사의학실 근무 경력만 해당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대요건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구 자격증은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한 사본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임상병리사)
----	--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항목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① 지원동기 및 본인소개

- * 공직자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성격 장·단점 등

②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성공사례) 및 경력개발

- * 팀웍·리더십·협상능력 발휘로 실적 달성 사례, 직무관련 자기개발 등

③ 소속 구성원(또는 고객)과의 관계

- * 직장, 학교 등에서 동료와의 갈등 및 극복사례, 불만민원 처리 등 고객서비스 사례 등

④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 *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앞으로의 각오 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 글씨크기 15,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mm,
상·하 여백 각각 15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직급 및 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 (임상병리사)
----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 분량은 A4용지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글씨크기 15,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mm, 상·하 여백 각각 15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공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관련 직무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 포함)	근무기간	근무연월일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근무형태
1. ○○○○ (팀)	2019.X.X ~ 2015.X.XX	XX년XX월XX일	주임		상근 (주40시간)
	2015.X.X ~ 2014.X.XX	XX년XX월XX일	과장		상근 (주35시간)
2. △△△△ (팀)	2014.X.X ~ 2012.X.XX	XX년XX월XX일			비상근 (주3시간)
	2012.X.X ~ 2011.X.XX	XX년XX월XX일			
총 경력		○○년○○개월 ○○일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 예정
-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증빙자료 첨부**
-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2월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 발생 시에는 즉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제출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⑤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별도 기재**
- ⑥ 주요수행업무 및 업무실적은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⑦ **근무형태는 정규직/비정규직, 상근*/비상근 여부, 정규직, 상근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 상근 :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일마다 출근, 일정시간(주40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 시간제 근무(주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예-계약직으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관련 직무와 관련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이 경우 심의를 통해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서명 필수

경 력 증 명 서

기 관 현 황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형태	☐ 국가 혹은 지자체 ☐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 ☐ 개별법에 의한 법인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의원 등 ☐ 공사 혹은 공단 ☐ 기타()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근무년한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퇴사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근무형태	주 ○○시간	
퇴직사유	사유 기재			근무형태		
근 무 세 부 내 역						
부서명	직급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술)		
		~				
		~				
		~				
상 별 사 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류	기관명	년 월 일	종류	기관명
				담 당 자	(인)	
				확 인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

직 인

※ 기관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위 서식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기관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위 서식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하며 발급 담당자(확인자) 및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시간제근무자인 경우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시간비례 경력산정)
- 재직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증명서는 최근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단 유효기간이 없는 등 갱신을 요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
- 근무경력 : 4대보험 납부 이력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또는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충실히 기재하되, 필요 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희망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응시)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휴대전화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